

# 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41,424,773	22,242,743
일반회계	662,240,867	19,867,226
특별회계	79,183,906	2,375,517
기타특별회계	79,183,906	2,375,517
동남권 방사선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27,888,130	836,644
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	2,700,000	81,000
의료급여기금	524,018	15,721
지하수관리	1,282,315	38,469
폐기물처리시설	6,513,092	195,393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13,376	30,40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1,736,745	352,102
원자력발전지역개발	23,622,635	708,679
주차장	3,903,595	117,10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544,68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